

국가지정(등록)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 청 인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번호:)	/휴대전화:)

대상 문화재	명 칭	
	종 류	수량
	소재지(보관 장소)	
보호구역 · 보호물		

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	☐ 수리·정비·복구·보존처리·철거하는 행위	☐ 포획·채취·사육·도살·인공증식·인공복제·방사·위치추적기부·착·혈액 등 채취·표본·박제·매장·소각하는 행위 *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·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.	☐ 건축물·도로·관로·전선·공작물·지하구조물 등의 신축·증축·개축·이축·용도 변경(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하는 행위	☐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	☐ 토지 및 수면의 매립·간척·땅파기·구멍뚫기·땅깎기·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	☐ 수로·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
	☐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	☐ 오수·분뇨·폐수 등을 살포·배출·투기하는 행위	☐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	☐ 토석·골재·광물 및 그 부산물·가공물을 채취·반입·반출·제거하는 행위	☐ 광고물 등의 설치·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	
국가등록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(※ 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)	☐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·색채·재질·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	☐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·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·색채·재질·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	☐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·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·색채·재질·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	☐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·색채·재질·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	☐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	☐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

신청사항	위 치				
	내 용				
	사 유				
참고 사항	※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,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.				

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	착 수	소 요 경 비	원	재 원	
	완 료	그 밖 의 사 항			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제1항제1호·제5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·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14조제1항·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(등록)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
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현상변경 계획서	수 수 료
	2. 위치도,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	
	3. 현장 사진	
		없 음

처리 절차

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